

보도	2024.8.27.(화) 조간	배포	2024.8.26(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팀장	김종호	(02-3145-8880)
	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담당자	선임	양길남	(02-3145-8735)
	보험개발원	책임자	실장	문성연	(02-368-4343)
	자동차보험실 자동차보험팀	담당자	팀장	성원명	(02-368-4048)
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부장	김영산	(02-3702-8590)
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험팀	담당자	팀장	김형일	(02-3702-8591)	

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

〈 주요 내용 〉

◆ **(피해자 구제 개요)** '24.8.14.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

※ '09년부터 금감원,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되어, 보험업계 TF운영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

◆ **(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)** 고지기한 단축, 고지방법·환급절차 표준화

-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발생 사실의 고지기한을 단축
 - 회사별로 최대 30일 → 15 영업일 이내로 운영
- 보험회사의 피해사실 고지방법을 표준화
 - 고지횟수 기준 부재(통상 2회) → 최소 4회 이상 고지
 - 유선 위주의 고지 → 유선, 문자, 이메일로 고지방식을 확대
 - 연락두절시 조치 부재 → 변경주소 확인(행안부) 후 재고지
-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절차 표준화
 - 계약자 환급 동의 후 기한 없이 환급(통상 3일) → 계약자 동의 후 즉시 환급

◆ **(장기 미환급 해소)** '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9,482명에게 할증 보험료 86억원(전체의 97.2%)을 환급, 1,312명(2.4억원)이 미환급*된 상태

* 미환급 사유 : 연락처 변경, 통화거절,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-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'24.8.14.~10.31.까지 약 2개월간 실시
 - 환급안내 : 보험사에서 연락(문자·유선·이메일) → 연락두절시 주소 확인(행안부)
 - 환급방법 : 보험계약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험회사가 할증보험료 입금

I. 추진배경

□ '24.8.14.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

※ '09년부터 금감원,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

-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규정화됨에 따라 그간 보험 업계 TF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

▣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

II. 피해자 구제 강화

① **(고지기한 단축)** 보험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

-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히 고지

② **(고지방법 표준화)**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문자·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

- (고지기준 신설)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, 문자, 유선,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하여 안내*

*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, URL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(붙임2 참조)

-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(행안부)하여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

③ **(환급절차 표준화)**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하였으나,

- '24.8.14. 이후에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

III. 향후계획

□ '24.8.14. 법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,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

□ '24.8.14.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'24.8.14.~'24.10.31.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환급 처리

- '09년부터 피해자 19,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(전체의 97.2%)을 환급하였고, 1,312명(2.4억원)이 미환급*된 상태

* 미환급 사유 : 연락처 변경, 통화거절,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- 환급안내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연락 확대(문자·유선·이메일) → 연락두절시 변경주소 확인(행안부) 순서로 진행

-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어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

□ 한편,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「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」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

* ①보험개발원 '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' 또는 ②금융감독원 '파인' 홈페이지에서 '잡자는 내 돈 찾기' 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(보험개발원) 조회 시스템 메뉴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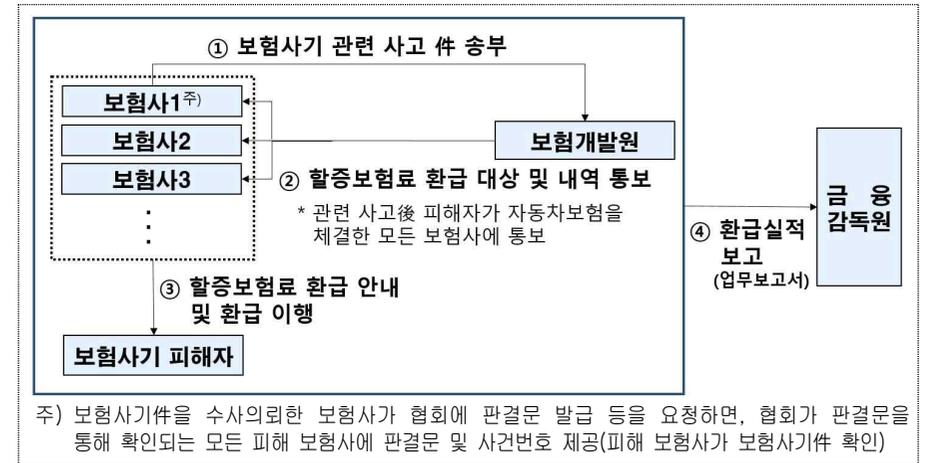
붙임 1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업무 개요

□ (개요) ①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件*을 확인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②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, ③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

*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件(기소유예 포함)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件 중 가해자·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

- 보험사 지점 담당자(설계사)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임을 안내하고 환급절차를 진행

※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절차



(참고) 그간의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규모

◆ 제도 도입 이후 '24.3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,482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6억원 환급

(단위 : 백만원, 명, 건)

구분	일괄 환급*	'09.6월 ~ '13년	'14년~'19년	'20년~'24.3월	합계
금액	490	1,642	2,594	3,874	8,600
인원	908	3,746	5,952	8,876	19,482
계약건수	2,971	11,073	25,175	29,204	68,423

* '06.7월 ~ '09.5월 기간 중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에 대해 일괄 환급 실시('09.6월)

붙임 2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표준안내문

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안내

안녕하세요, ○○○ 고객님.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하여, 과거 '20.00.00.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.

고객님께서서는 해당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었던 부분만큼 사고발생 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유의사항

- 사고접수 이후 다른사고가 있으신 경우, 사고특성에 따라 수정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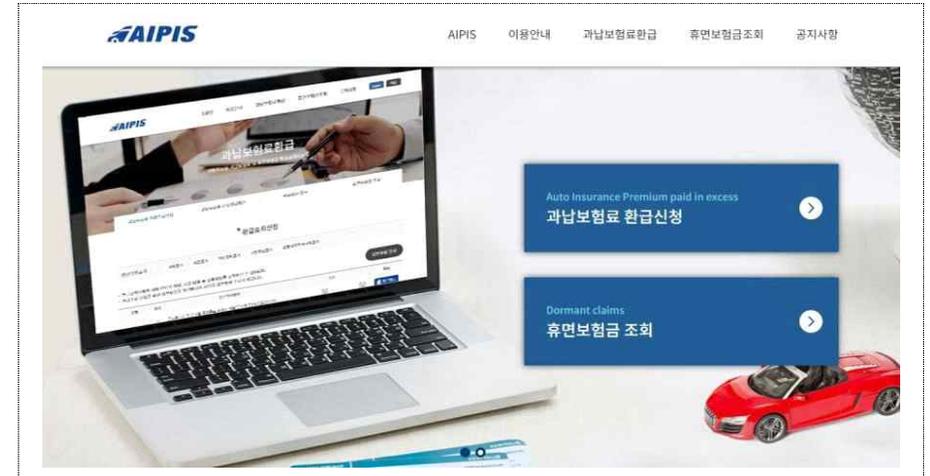
▶ 환급방법

- 과거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콜센터 또는 가입 당시 계약 담당자 (계약 점포)로 연락하시어 환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가입한 보험사를 모르실 경우,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**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'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'**를 통해 사고 이후 계약한 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, 확인 후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※ 계좌 입금 또는 방문 수령 가능)

(주의!)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한 본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URL을 삭제하고 송부드립니다. 만약 URL이 있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방법(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)

-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(<http://aipis.kidi.or.kr>) 접속 → “과납보험료 환급 신청” 메뉴 클릭



- 2 휴대폰 문자인증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



3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“보험사기 피해사실 조회” 버튼 클릭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| 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 | 휴면보험금 조회 | 보험회사 정보

환급조회신청

연관업무조회 | 계약조회 | 사고조회 | 가입경력조회 | 차량정보조회 | **보험사기피해사실조회** | 구조변경차량조회

- 보험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내역(벌점)취소 신청자료 출력 가능(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 클릭)
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본인의 계약, 사고 내용 등 보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급조회 신청을 위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병무청 연계조회를 통한 군 운전경력기간 증빙은 2014.1.1 이후 전역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.**

첨부파일 안내 | 병무청연계조회 안내

유형	체크	필수확인항목	기간	첨부

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본인의 계약, 사고 내용 등 보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급조회 신청을 위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화번호

요청 취소

4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| 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 | 휴면보험금 조회 | 보험회사 정보

보험사기피해 환급조회신청

연관업무조회 | 계약조회 | 사고조회 | 가입경력조회 | 차량정보조회 | **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** | 구조변경차량조회

조회 | 출력

- 귀하의 보험사기피해내역입니다.

보험사기피해사고 처리회사	사고일시	사고 차량번호

- 해당계약은 보험사기사고 이후에 본인이 가입한 해당사고와 관련된 계약이며, 해당계약 중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순번	환급보험사	보험기간	차량번호	담당자번호	환급여부

- 환급여부 O : 환급완료된 계약 또는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입니다.
- 환급여부 X : 귀하께서 보험사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는 계약입니다. 다만, 자료가 오래되어 환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계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해당내용에 대하여 환급요청을 하시려면 아래 환급요청을 click하시기 바랍니다.(단, 환급여부가 'X' 건에 대하여 환급요청됩니다.)

전화번호

환급요청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